

유족대표자 선정서

유 족 대 표 자	성명(한자)	()	주민등록번호	-
	주 소			
	국외강제동원 희생자·미수금 피해자와의 관계		유선전화: 휴대전화:	

본인들은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4조제2항에 따라 본인들의 위로금(미수금 지원금)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1	성 명	인	주민등록번호	-
	주 소			대표자와의 관계
2	성 명	인	주민등록번호	-
	주 소			대표자와의 관계
3	성 명	인	주민등록번호	-
	주 소			대표자와의 관계
4	성 명	인	주민등록번호	-
	주 소			대표자와의 관계
5	성 명	인	주민등록번호	-
	주 소			대표자와의 관계
6	성 명	인	주민등록번호	-
	주 소			대표자와의 관계
7	성 명	인	주민등록번호	-
	주 소			대표자와의 관계

구비서류: 위임인의 인감증명서[용도: 위로금(미수금 지원금) 신청용] 각 1부

210mm×297mm(보존용지(1종) 70g/m²)

[유족대표자 선정방법]

1. 우선순위 유족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 위로금(미수금 지원금)의 신청 및 수령에 대한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.
2. 유족 중 위로금(미수금 지원금) 지급 신청은 유족의 순위에 따르며 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 유족이 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.
 - 가. 최우선순위 유족: 희생자·미수금피해자의 생존해 있는 배우자 및 자녀
 - 나. 가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: 희생자·미수금피해자의 생존해 있는 부모
 - 다. 가, 나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: 희생자·미수금피해자의 생존해 있는 손자·손녀
 - 라. 가, 나, 다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: 희생자·미수금피해자의 생존해 있는 형제자매
3. 위임인이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, 위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

※ "희생자"는 "국외강제동원 희생자"를 말합니다.